

성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 평가기준

- 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성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평가배점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수행능력평가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가격평가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총 계	100점	100점

- 다.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 라.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나. 제출 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성북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3.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비 고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30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4이상	미제출		
		30점	27점	24점	21점	0점		
2. 수행실적	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20건미만 ~15건이상	15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1건이상		미제출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0점
3. 업무중첩도	30	성북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하			
		30점	20점	10점	5점			
4. 신용도평가	20	신용평가등급						
		A-이상	BBB-이상	B-이상	CCC+이하	미제출		
		20점	18점	16점	14점	0점		
총 계	100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 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 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 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4) 업무중첩도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성북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시)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범위	세부기준 및 배점		비 고
제안가격	100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시)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